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구 미 시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4.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전력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23년 10월 산동읍 주민협의체에서 5공단 부근 마을회 부지 내 마을물류창고 건립을 요청, 통합신공항 건설에 대비하여 물류창고 및 캠핑장 사업을 통해 주민의 소득증대를 실현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용을 통해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취득재산】

□ 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 위치 : 산동읍 도중리 산116-1번지
- 대상 : 건물 660㎡(2개동), 캠핑장 3,300㎡, 태양광시설
- 사업기간 : 2024 ~ 2025년
- 총사업비 : 3,477백만원

※ 사업비 산출내역 : 공사비(토목기초, 건축공사) 3,200백만원

설계 및 감리비 277백만원

○ 주요시설 : 마을물류창고, 캠핑장, 태양광 건립공사 1식

구 분	면적(m ²)	용 도	비 고
1동(지상1층)	660	마을물류창고	지붕 및 잔여부지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예정
2동(지상1층)	660	마을물류창고	
잔여부지(토지)	3,300	캠핑장	

○ 추진현황 및 계획

-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 : '23. 7~10월
- 사업계획 제출(구미시→전력기금사업단) : '23. 10. 31.
- 사업승인확정(전력기금사업단) : '23. 12월

○ 향후추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 '24. 9월
- 공유재산 관리계획 : '24. 10월
- 측량 및 건축기획용역 : '25. 2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 : '25. 4월
- 물류창고 조성공사 착공 : '25. 6월

3.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1	1,320	3,477
	1.매입	토지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1	1,320
			3,477	

취득재산 목록

회계명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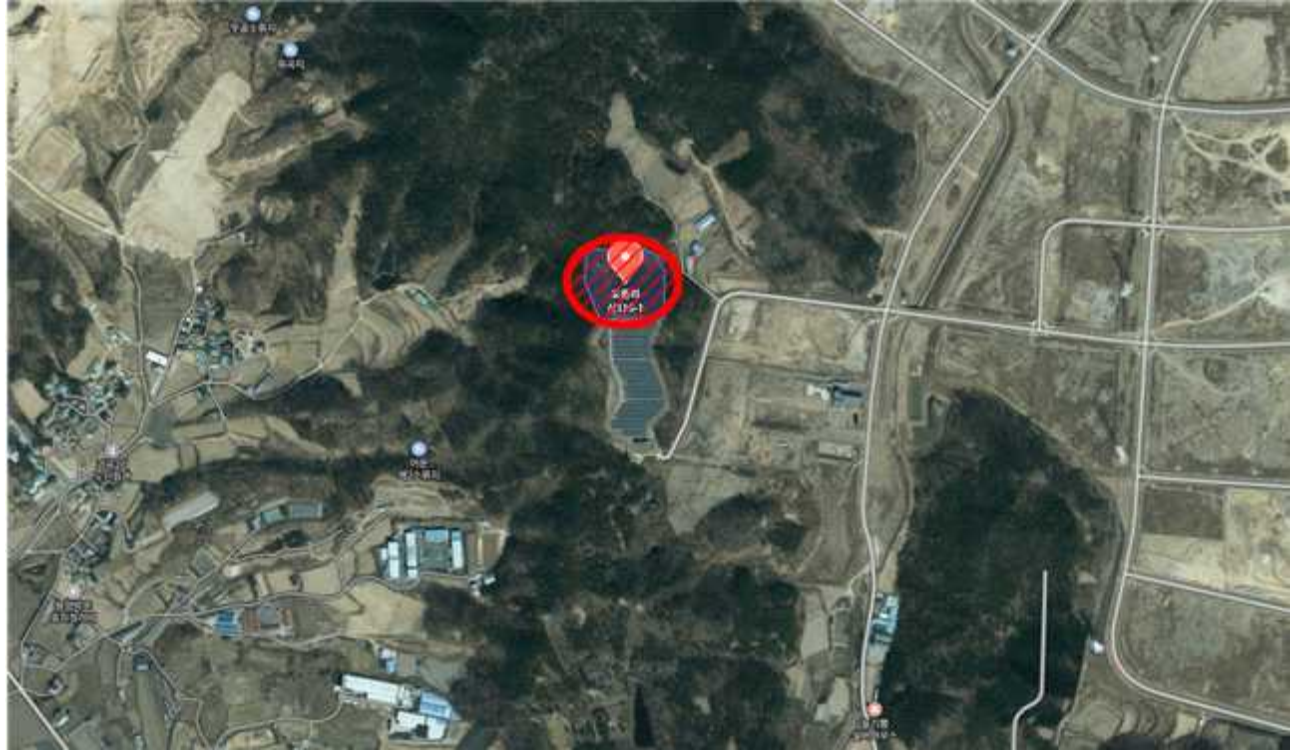
(단위 : m², 백만원)

구분	재산의 표시			추정 가액	취득 시기	사유	소유자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소계			1,320	3,477				
취득	건물	산동읍 도중리 산116-1	1,320	3,477	2025년	마을물류창고 조성	구미시	신축

위 치 도

□ 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 소재지 : 산동읍 도중리 산116-1번지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비용추계서

(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간 : 2025년 ~ 2026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합계
세출	○ 산동읍 마을물류창고 건립	3,477				3,477

4.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 비	3,477					3,477
	도 비						
	시 비						
	민 간						
	기 타						
	합 계	3,477					3,477

5. 부대의견

- 본 추계결과는 사정에 따라 재정수반액이 변경될 수 있음

6. 작성자 : 전략산업과 에너지산업팀 이승훈(054-480-6196)

□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합 계	3,477															
공사비 (철거 및 건축공사)	3,200	<p>□ 건축공사 연면660㎡×1,500천원/㎡(창고 등)×2개동 = 20억원 ※ 최근 창고 건립 사례(2023) - 조달청 공사비 정보광장 - 부산지방조달청 비축창고 신축: 6,701.4㎡×1,289천원/㎡=86억원 - 군산 비축창고 신축: 14,634㎡×1,487천원/㎡ = 217억원 - 전남 곡물저장고 증축: 399㎡×746천원/㎡ = 2.9억원 - 영남 종자종합처리센터 신축: 6,510㎡×1,274천원/㎡ = 83억원</p> <p>□ 토목공사(캠핑장 등) = 10억원 □ 태양광 시설 추가 = 2억원 ※ 추정 사업비이며, 계획설정 및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마을물류창고, 캠핑장시설, 태양광 건립공사 1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 분</th> <th>면적 (㎡)</th> <th>용 도</th> <th>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1동(지상1층)</td> <td>660</td> <td>마을물류창고</td> <td rowspan="3">지붕 및 잔여부지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예정</td> </tr> <tr> <td>2동(지상1층)</td> <td>660</td> <td>마을물류창고</td> </tr> <tr> <td>잔여부지(토지)</td> <td>3,300</td> <td>캠 핑 장</td> </tr> </tbody> </table>	구 분	면적 (㎡)	용 도	비 고	1동(지상1층)	660	마을물류창고	지붕 및 잔여부지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예정	2동(지상1층)	660	마을물류창고	잔여부지(토지)	3,300	캠 핑 장
구 분	면적 (㎡)	용 도	비 고													
1동(지상1층)	660	마을물류창고	지붕 및 잔여부지 활용하여 태양광 사업예정													
2동(지상1층)	660	마을물류창고														
잔여부지(토지)	3,300	캠 핑 장														
설계 및 감리비	277	<p>□ 설계용역 및 감리비(공사비의 6.5%) ○ 물류창고, 캠핑장, 태양광설비 등</p>														

— <<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특 별) >> —

- ▶ 사업기간 : 2024. 2월 ~ 2025. 12월
- ▶ 사 업 비 : 103.86억원(기금)
- ▶ 사업주체 : 구미시
- ▶ 사업내용 : 발전소주변지역(반경 5km) 주민복지 및 소득증대 관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 5. 생략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7. ~ 11. 생략
- ②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8조(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① 법 제47조 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② ~ ④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

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 ⑦ 생략

소관부서		회 계 과 (전략산업과)
입 안 자	과 장	임 응 건 (박 영 표)
	팀 장	김 은 화 (김 영 필)
	담 당 자	주 정 호 (480-5072) (이 승 훈) (480-6196)